

“보건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 다 음 -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3. 귀 기관 소속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아래에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방법) KOHES포털(www.kohes.or.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은 붙임 참조

나. (문의처) 의료해외진출지원단 해외의료기획팀 김동현 연구원

(☎ 043-713-8304 / kdh77@khidi.or.kr)

붙임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담당자 김동현 팀장 양지영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전결 08/10 황성은

협조자

시행 의료해외진출지원단 (2017.08.10.) 접수 ()
-1611

우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khidi.or.kr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5동
전화 043-713-8304 전송 043-713-8906 / kdh77@khidi.or.kr / 공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안내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16.6.23 시행) 제 4조에 따라 의료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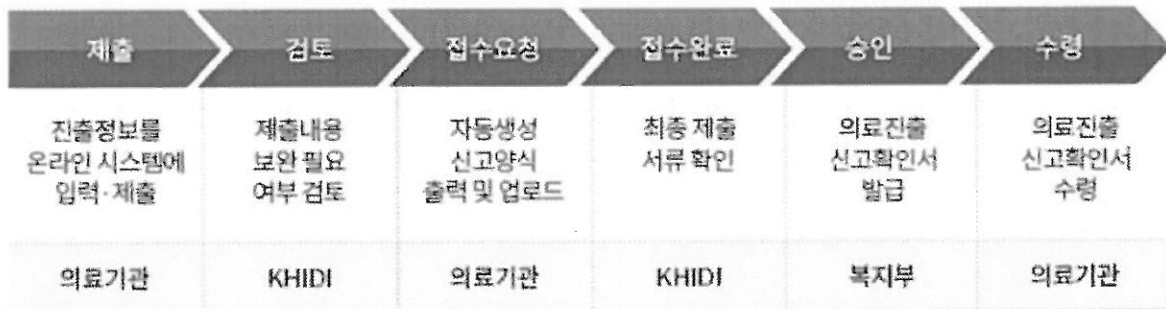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인(의료기관 개설자)은 KOHES 포털(www.kohes.or.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가입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 [온라인신고]에서 신고

※ 법 제2조(정의)의 진출형태에 따라 기관별 한번 신고가 아닌 건별 신고

※ 해외진출 건 별로 다른 번호의 확인증 발급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 이용 신고 프로세스 >



□ 해외진출 신고 요건

- (신고대상자)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 또는 법인)
- (신고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 신고 의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 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에 신고

□ 미신고시 제재

-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기획팀 김동현 연구원
- Tel : 043-713-8304 / E-mail : kdh77@khidi.or.kr

[첨부 1] 신고서 서식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진출구분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 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진출내용	국가 명칭	지역 명칭	
	진출형태	투자예정규모 (백만원)	
해외 연락사무소	명칭	연락처	
	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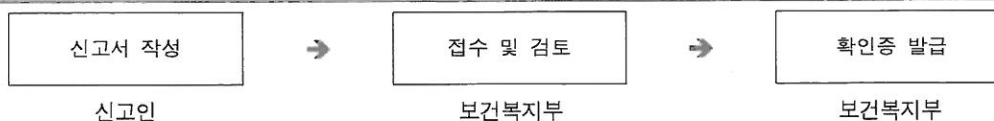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첨부서류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법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신고인란의 "의료기관 종류"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의료기관 주소"에는 의료기관의 주소와 법인 소재지 주소를 함께 적으시고, "대표자 생년월일"에는 의료기관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3. 진출내용란의 "진출 형태"에는 단독투자, 합작/합자투자, 인수합병,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컨설팅계약, 위탁경영, 일괄수주, 기타로 구분하며 적으시고, 복수의 진출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진출 형태를 모두 적습니다.
4. 진출내용란의 "국가 명칭" 및 "지역 명칭"은 영어로 적습니다.
5. 해외 연락사무소란의 "명칭" 및 "주소"는 영어로 적습니다.

처리 절차



[첨부 2] 사업운영계획서 서식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

진출 사업명	(국문)					
	(영문)					
진출 의료기관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소재지(주소)					
	의료기관 구분 (의료법 제3조)	1. 의원급 : ① 의원 ② 치과의원 ③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 ① 병원 ② 치과병원 ③ 한방병원 ④ 요양병원 ⑤ 종합병원 : 100~300병상 이하(), 300병상 초과() ⑥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여부 (의료법 제3의5)	① 지정 ② 미지정				
	설립 구분	① 개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공립 ③ 국립대학 ④ 학교법인 ⑤ 특수법인 ⑥ 의료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⑧ 사단법인 ⑨ 재단법인 ⑩ 회사법인 ⑪ 기타()				
	진료과목 (복수선택가능)	① 건강검진 ② 내과 ③ 소아청소년과 ④ 신경과 ⑤ 피부과 ⑥ 성형외과 ⑦ 정형외과 ⑧ 신경외과 ⑨ 산부인과 ⑩ 안과 ⑪ 이비인후과 ⑫ 비뇨기과 ⑬ 재활의학과 ⑭ 가정의학과 ⑮ 마취통증의학과 ⑯ 영상의학과 ⑰ 진단검사의학과 ⑱ 한방 ⑲ 치과 ⑳ 일반외과 ㉑ 정신과 ㉒ 기타()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여부			인력 현황	전체 인원	
					전담부서 인원	
	사업총괄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담당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고인 ○ ○ ○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② 사업운영계획

1. 사업추진 경위

- 의료 해외진출 추진배경, 진출목적 및 의의 등

2.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 진출 의료기관 현황 (진출 의료기관 현황 및 해외진출 사업수행 역량)
- 진출국(지역)* 및 사업** 현황
 - *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 일반현황, 사업여건(시장현황, 관련 제도 등) 등
 -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형태, 규모,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

나.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 사업추진 현황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경과 및 내용, 애로사항 등 작성)
 -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 현지 파트너 보유 시 파트너 소개(기업 현황 및 신용도 등)
- 사업추진 계획 (진출전략 및 추진 단계별 수행계획, 연도별 시설·장비 및 인력 운영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 작성)

3. 사업성 검토

- 시장성* 및 기술성** 분석
 - * 시장의 특성, 수요-공급 분석, 위험요인 분석, 예상 시장점유율 전망 등
 - ** 사업의 특성 분석, 제공 원가 및 제공 과정, 소요인력 등
- 경제성 분석 (연도별 투자비 및 수입 추정, 투자 순수익 및 수익률 등)

4. 중장기 계획

- 중장기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 확대 전략 (확대 목표를 정량, 정성적으로 기재)

5. 기대효과